# 2025년 「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」 2차 모집 공고

과학기술분야 일·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5년 2차 「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」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.

2025.03.04.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

# 2025년 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주요 추진 사항

#### ● 사업 지원 규모 및 공고 일정

- (지원 규모) 총 **331명** 내외
- (공고 일정) 분기별 총 <u>4회</u> 공고

<2025년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공고 일정(안)>

차수	1차	2차	3차	4차
공고 일정	1. 13.(월)~2. 12.(수)	3. 04.(화)~4. 13.(일)	6월 예정	9월 예정

## ② 채용 예정 기관 신청 및 우선 선정 실시 ☞ 12쪽

- 공고기간 내 인력 미채용 기관도 '채용 예정 기관' 자격으로 사업 신청 가능
- '채용 예정 기관'은 기관 단독 신청, 기관 평가 통한 우선 선정
- 채용기간(기관 선정 후 3주) 내 인력 채용 시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확정

## 3 지역별 사업 접수처 분리 운영 ☞ 8쪽

- 사업 신청 시 해당 지역별\* 접수처를 통해 온라인 신청
  - \* 인력 근무지 기준 수도권(강원 포함). 충청권, 영남권, 호남·제주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
  - \* (접수처) ①수도권/강원: WISET, ②충청권: 충북TP, ③영남권: 대구TP, ④호남·제주권: 광주TP
- 지역별 위탁 기관을 통한 과제 신청 접수, 평가, 선정 실시

# 1. 사업 목적

- □ 과학기술 R&D 분야 재직자의 출산·육아휴직,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육아·일 병행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최소화
- □ 대체인력, 인턴연구원 및 전문박사연구원 등 지원인력 대상 R&D 분야 업무경력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지원

## 2. 지원 분야

□ 기관의 인력 조건 및 활용수요에 따라 2개 트랙, 4개 유형 지원

항	모	[트랙1] 휴직·C	단축연구자 지원 	[트랙2] 육아기	l 연구자 지원
8	_	휴직제 형	단축제형	인턴연구원	전문박사연구원
지 조		출산·육아로 인한 <b>휴직자 또는</b>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채용 시		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인력 신규채용 시	
지 내		인건비 지원 (학/석사) 2,1000만원/연 (박사) 2,300만원/연		<b>인건비 지원</b> <u>1,000만원</u> (약 166만원/월)	인건비 지원 <u>3,000만원/연</u> (250만원/월)
지기		3~15개월	3~12개월	6개 월 *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	최대 2년 * 1년 단위 연치평가 실시
신 청	인 력	<b>이공계 학사 이상</b> 소지자 ※성별 !		이공계 학·석사 학위 취득 후 <b>5년 이내</b> 의 <b>여성과학기술인</b>	이공계 분야 <b>박사</b>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
자 격	기 관	출산,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는 <u>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</u>			유연한 근무를 위해 채용이 필요한 <b>야 연구기관</b>
유 사		지원인력 <b>남녀무관</b> ( <b>인턴</b> ) 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( <b>전문박사</b> ) 연구행정업무로 채용 불			
지 규		000명 내외			

<sup>※</sup> 동일 대상(휴직/단축자, 육아기연구자, 대체인력)이 여러개 유형 동시 지원 불가 (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)

# I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

## [트랙1] 휴직 단축 연구자 지원

## 1. 지원 개요

- □ 지원 내용 :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직·근로시간 단축 연구자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
  - 인거비 지원 :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
    -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**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**

구분	학·석사	박사
정부지원금	2,100만원/연(175만원/월)	2,300만원/연(약 191.6만원/월)
기준연봉	3,000만원/연	3,300만원/연

- ※ 기준연봉 산정방법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(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)
- ※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.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[참고1] 확인
- 교육훈련 : 지원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(연 1회 필수) ※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

#### □ 지원 조건 및 유형

① 휴직제형 : 출산, 육아, 가족돌봄, 건강 등의 사유로 **휴직제도를 사용한 연구자**가 있는 경우

#### ※ 휴직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지원시작일(2025.05.01) 기준 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
- 휴직자 및 지원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
- 지원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(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)
- 인수인계기간 및 휴직기간 중 지원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
- ※ 교육, 장기출장, 학업 등 자기개발 혹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목적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
② 단축제형 : 임신, 육아, 가족돌봄, 건강 등의 사유로 **근로시간 단축제도를** 사용한 연구자가 있는 경우

#### ※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지원시작일(2025.05.01) 기준 단축제도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
-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: 주 15~35시간,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
- 단축제 사용자 및 지원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
- 단축제 사용자 및 지원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(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)
  - 과제 수행 중 출퇴근 점검 결과 이상 발생 시 지원 취소 또는 협약 해약
-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지원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
- ※ 교육, 장기출장, 학업 등 자기개발 혹은 지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목적으로 단축 근로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- □ 업무 분야 : 연구직, 기술직,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
  - ※ 휴직자(단축근무자)와 지원인력의 소속부서가 다르더라도 근무지는 동일해야 하며,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함
- □ 지원 시작일 : 2025.05.01
- □ 지원 기간 :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
  - 휴직제형 : **최대 15개월** 이내에서 실제 휴직기간에 따라 조정
  - 단축제형 :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실제 단축근로 기간에 따라 조정

구분	① 휴직제형	② 단축제형	비고
사전 인수인계기간(A)	0~2개월	0~2개월	
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(B)	3~15개 월	3~12개월	총 지원기간은 A, B, C
사후 인수인계기간(C)	0~2개월	불가	안에서 조정 가능
총 지원기간(A+B+C)	3~15개월	3~12개월	

- ※ 지원금은 학·석사 175만원/월, 박사 191.6만원/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(예시)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× 15개월 = 2.625만원
- ※ 지원 시작일 이전의 휴직(단축근로)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- ※ 지원 시작일 이전에 휴직(단축근로)이 시작된 경우 이전의 휴직(단축근로)기간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며(소급적용 불가), 사전 인수인계기간 해당없음
- ※ 지원 기간 예시

유형	휴직(단축근무)기간	사전 인수인계 기간	사후 인수인계 기간	지원(협약) 기간
휴직	2024.10.01~2025.09.30	해당없음	2025.10.01.~2025.11.30	2025.05.01.~2025.11.30 (총 7개월)
단축	2025.06.01.~2026.02.28	2025.05.01.~2025.05.31	불가	2025.05.01.~2026.02.28. (총 10개월)

## 2. 신청 자격

#### □ 지원 인력

-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(참고2) 소지자
  - ※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[졸업증명서]에 명시된 "이학학(석/박)사" 또는 "공학학(석/박)사" 등
  - ※ 의·약학, 치의학,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(단, 수행업무가 R&D 관련 업무이어야 함)
  - ※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
  - ※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
- 2025.01.01. 이후 신규 채용(예정)자
  - ※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(2025.05.01)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
- 지원 인력은 연구직, 기술직,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

#### ----- < 업무 내용 예시 > -----

- 기초연구, 기술 및 제품 개발, S/W 개발, 산업디자인, 특허 조사·분석, 시장 기술조사
- 연구장비·기자재 운용, 설계, 도면의 작성, 가공·조립, 실험·검사·측정
- 전문적 연구지원, 정보 가공·분석, 특허출원
- 시제품 설계 시험·제작. 기술마케팅. 기술영업. 기술협력 등
- 연구행정 업무

#### □ 지원 기관

○ R&D분야 재직자 중 출산,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(예정)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(예정)자가 있는 **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** 

#### 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
-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
-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
- 지원기관 부서별 인력 1명 지원
  - ※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, 연구·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

# [트랙2] 육아기 연구자 지원

## 1. 지원 개요

- □ 지원 내용 :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원활한 연구를 위한 인력을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으로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
  - ※ 육아기 연구자란?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<u>남녀</u> 연구자로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, 단축근무 사용 여부 무관
  - **인건비 지원** :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
    -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지원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**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**

구분	①인턴연구원 채용 시	②전문박사연구원 채용 시
정부지원금	1,000만원(약 166만원/월)	3,000만원/연(250만원/월)
지원기간	2025.05.01. ~ 2025.10.31.(6개월) ※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계속 고용 시 <u>6개월 추가 지원</u>	2025.05.01. ~ 2026.04.30.(최대 2년) ※ 1년 단위로 <b>연차평가를 실시하여</b> 계속지원 여부 결정
기준연봉	해당없음	4,500만원/연
지원조건	이공계 학·석사 학위 취득 후 <b>5년</b> <b>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</b>	이공계 분야 <b>박사 학위를 소지</b> 한 여성과학기술인
시간선택제	시간선택제 채용 불가	시간선택제 채용 가능

- ※ 기준연봉 산정방법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(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)
- ※ 전문박사연구원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[참고1] 확인
- **교육훈련** : 지원 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(연 1회 필수) ※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
- □ 업무 분야 : 연구직,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
  - ※ 인턴연구원에 한하여 연구행정 업무 수행 가능
  - ※ 육아기 연구자와 지원인력은 소속부서와 근무지가 동일해야하며,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함

## 2. 신청 자격

#### □ 지원 인력

- 2025.01.01. 이후 신규 채용(예정)자
  - ※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(2025.05.01)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
- 인턴연구원 : 이공계 학사·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(공고일 기준)의 여성과학기술인
  - ※ 박사 학위소지자는 제외하며, 동등학력 인정 불가
- 전문박사연구원 : 이공계 분야 **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** 
  - ※ 박사 학위 취득 연도는 관계 없으며, 동등학력 인정 불가
  - ※ 박사 학위 수료자, 졸업예정자, 비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
- 지원 인력은 연구직, 기술직,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

#### ---- < 업무 내용 예시 > -----

- 기초연구, 기술 및 제품 개발, S/W 개발, 산업디자인, 특허 조사·분석, 시장 기술조사
- 연구장비·기자재 운용, 설계, 도면의 작성, 가공·조립, 실험·검사·측정
- 전문적 연구지원, 정보 가공·분석, 특허출원
- 시제품 설계 시험·제작, 기술마케팅, 기술영업, 기술협력 등
- 연구행정 업무(인턴연구원에 한함)

#### □ 지원 기관

○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**과학기술** 분야 연구기관

#### <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(어느 하나 해당 시) > ---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
-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
-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
- 연구팀\* 당 인턴·전문박사 연구원 각 1명까지 지원 가능
  - \* 연구팀 : 기관 내 연구(프로젝트) 수행 단위 기준

# Ⅲ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# 1. 신청 방법

□ **접수처:** 인력의 근무(예정)지를 기준으로 수도권(강원), 충청권, 영남권, 호남·제주권 등 4개 지역별 접수처를 통해 접수

접수 기관	지역	방법	접수처	문의처
WISET	수도권 (강원)	온라인	<ul> <li>W브릿지 사이트(<u>www.wbridge.or.kr</u>)</li> <li>※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→ 일자리 → 대체인력지원 →</li> <li>모집 공고 → 사업 신청하기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</li> </ul>	02-6411-1064 02-6411-1072
충북 TP	충청권	이메일	<u>hjlee@cbtp.or.kr</u> 또는 <u>yjkim@cbtp.or.kr</u> ※ 신청서 작성 →이메일 접수 →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	043-270-2253 043-270-2252
대구 TP	영남권	온라인	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(www.dpis.or.kr)  ※ DPIS 접속 및 로그인 → 사업공고 → 2025년 과기R&D  대체인력 활용지원사업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	053-757-3732 053-757-3739
광주 TP	호남 · 제주권	이메일	<ul><li>hansol@gjtp.or.kr</li><li>※ 신청서 작성 → 이메일 접수 →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 필수</li></ul>	062-602-7227

- ※ 지역 별 신청채널 오 접수 시 신청 이후 담당 접수기관이 조정될 수 있음
- ※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-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(별첨 확인)

# 2. 제출 서류

## □ 지원 인력

구분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비고
1	사업신청서	-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(서명 및 직인 필수)	
2	졸업증명서 사본	-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-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	
3	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(참고5(18쪽) 예시 화면 반드시 확인)	-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발급 ※ 마이페이지(개인) → 참여 프로그램 관리 →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(전체화면 캡쳐) -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/무와 관계없이 제출 -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(사업신청일 포함)	필수
4	경력증명서	-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 ※ 비이공계 학사(전문학사)·석사·박사의 경우 필수  ※ 이전 재직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	해당.
5	기타	-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-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(트랙1 지원 인력만 해당)	시

## □ 지원 기관

구분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비고
1	사업신청서	-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(서명 및 직인 필수)	
2	사업자등록증 사본	-	
3	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,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, 벤처기업확인서, 이노비즈 확인서, 연구소기업 등록증,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(구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) 등	- 해당 내용 중 택1 ※ 공공연, 대학 제외 ※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	필수
4	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	- 2021~2023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국세청 또는 회계사(세무사) 확인(원본/날인) ※ 공공연, 대학 제외	
5	가점 증빙서류	-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,가족친화인증서 사본. 중소 기업확인서 사본,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※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	해당 시
6	휴직·단축근로 증빙서류	- 휴직·단축근무 사유별 증빙서류 ① 출산·육아: 제외(추후 협약체결 시 제출) ② 가족돌봄: 가족관계증명서, 병명 및 진단기 간이 명시된 소견서·진단서 ③ 건강: 병명 및 진단기간이 명시된 소견 서·진단서 ④ 기타: 휴직(단축) 사유와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	필수
7	인력채용공고 또는 채용 관련 내부 품의(기안)문서	- '채용 예정 기관'의 경우 필수 제출	해당 시

# □ 신청 기간 : 3월 4일(화) ~ 4월 13일(일) 23:59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신청 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
-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
-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

# Ⅲ 평가 방법 및 기준

# 1. 평가 방법

- □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여 모집규모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□ 전문가 평가결과 60점(100점 만점) 이하 탈락

# 2. 평가 기준

- □ 요건심사: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 심사
  - 신청자격 부합성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
- □ 전문가평가: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
-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,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후 기관 평가 시 반영
- [트랙1] 휴직 · 단축 연구자 지원

평 7	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관 평가	기관 역량	- R&D 수행규모 및 R&D 투자의 우수성 - R&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 - (민간기업) 재무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, 활동성 등	20
	인력활용 계획	- 대체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- 사업을 통한 지원 사유의 타당성 - 휴직자/단축근로자와 대체인력간 업무 연관성	20
	근로환경	- 근무여건의 우수성(인건비, 복지제도) 등 -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	10
	지원 필요성	-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 동기 - 대체인력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	20
인력 평가	업무역량	<ul><li>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</li><li>전공 분야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</li></ul>	20
	역량개발 계획	-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- 인력의 R&D분야 발전 가능성	10
합계			

## ○ [트랙2] 육아기 연구자 지원

평.	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	기관 역량	- R&D 수행규모 및 R&D 투자의 우수성 - R&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 - (민간기업) 재무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, 활동성 등	20
기관 평가	인력활용 계획	-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- 육아기 연구자와 인턴/전문박사 연구원간 업무 연관성	20
	R&D 인력 활용 인프라	-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- 근무여건의 우수성(인건비, 근무시간, 복지제도) 등	10
	지원의 필요성	- 인력 활용 지원 필요성 및 신청 동기 -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	20
인력 평가	업무역량	- 담당 업무(연구분야)와 전공 일치도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-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	20
	역량개발 계획	-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- 인력의 R&D분야 발전 가능성	10
		합계	100

### ○ 우대가점: 트랙1 · 2 동일 적용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	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	1
	기관이 지방(서울, 경기, 인천 외의 지역)기업인 경우	1
	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	1
	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	1
   가점	기관이 우수기업연구소 선정 기업인 경우	1
716	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(예정)인 경우	
	※ 신청 시 정규직 채용(예정)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협약 또는 사업수행 중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	2
	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	1
	합계	8

# 3. 평가 결과 : 선정 공고문 게시 및 개별 통보(이메일 발송)

# 4. 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(안)

□ 선정공고 게시일	:	2025.04.28.( <sup>হ</sup>	늴)
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□ 선정자 대상 협약체결 안내 : 2025.04.30.(수) ~※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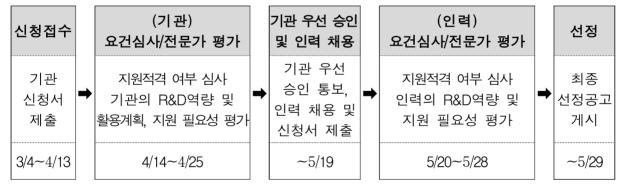
# IV 채용 예정 기관 신청 및 선정 절차 안내

#### 1. 운영 개요

- □ 대상: 사업 신청기간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'채용 예정 기관'
- □ 내용: 기관 우선 승인 및 인력 채용 기간 별도 부여
  - 인력 채용 수요가 있으나 신청 기간 내 인력 미확보 시 기관 신청서 단독 제출 ※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채용공고 및 내부품의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(필수)
  - 기관의 요건심사 및 전문가평가 통과시 기관 우선 승인, 향후 '인력 채용 기간(3주)' 부여
  - '인력 채용 기간' 내 인력 채용 후 인력 신청서 제출
    - ※ 기간 내 인력 미채용 또는 인력 신청서 미제출시 기관 승인 취소 및 사업 지원 불가
  - 인력의 요건심사 및 종합 전문가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

## 2. 선정 절차 및 일정

□ 채용이 확정된 인력-기관과 별도 절차와 일정으로 평가 실시



- ※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- □ 지원시작일 : 2025.06.01.
  - ※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(2025.06.01)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
- □ 신청 절차와 일정, 지원시작일을 제외한 사업 지원 조건과 내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것과 모두 동일함

# V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기간 동안 휴직자(단축제 사용자), 육아기 연구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나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협약은 유지됨
- 채용한 지원 인력의 4대 보험 및 퇴직금(12개월 이상 채용 시) 필수
- 지원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
- 정부지원금은 지원 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
- 사업의 수혜를 받은 지원 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협약 진행 중, 협약 체결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
  -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,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,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
  -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,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
- 지원기관 및 인력은 선정평가의 절차 및 결과(종합의견)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지원 인력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협약 지속이 불가할 경우, <u>1회</u>에 한하여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교체 가능
  - ※ 교체하고자 하는 인력은 기존 지원 인력의 퇴사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교체 가능
  - ※ 최초 지원금과 총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
  - ※ 인턴연구원의 경우 지원 인력 교체 불가
- 본 사업은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인력양성 사업으로 '3책5공' 적용 예외사업임
- 지역 위탁 운영: 충청권, 호남권, 영남권역의 운영 기관에 선정 과제 위탁
  - 지역 위탁 기관에서 관리할 과제는 선정 공고 시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이며, 관리 기관이 다를 뿐 사업의 운영내용은 동일

# 정부지원금 산정 안내

#### □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: 학·석사 2,100만원/연, 박사 2,300만원/연

- 지원 기관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지원 인력에게 정부지원금 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
  - 정부지원금 :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(1년 기준)
  - 기준연봉 :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(기준연봉 초과 가능)

#### < 협약기간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>

구분	학・석사	박사
정부지원금	최대 2,100만원/12개월 (175만원/월)	최대 2,300만원/12개월 (191.6만원/월)
기준연봉(전일제)	3,000만원/연	3,300만원/연

- ※ 기준연봉 산정방법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- ※ 정부지원금의 경우, 학·석사 175만원/월, 박사 191.6만원/월 기준으로 지원기간(협약기간)만큼 계상하여 지급됨

(예시) 석사 6개월 근무 시 175 × 6개월 = 1,050만원,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 × 15개월 = 2,625만원

## □ 시간선택제 채용의 경우(육아기 연구자 지원 중 인턴연구원 채용시 불가)

- 지원 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,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
  -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≥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
    -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A(석사)의 연봉이 3.200만원일 경우
      - → 석사의 기준연봉이 3.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
      - → 정부지원금 2,100만원 전액 지급
  - 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<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

[계산식] 시	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저브지의그 저애	
	전일제 근무 시 연봉	

- ※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지원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B(박사)의 연봉이 2,800만원일 경우

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,500만원)

- → 박사의 기준연봉이 3,3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
- $\rightarrow \frac{\mbox{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}}{\mbox{전일제 근무 시 연봉}} \times \mbox{정부지원금 전액} = \frac{2,800만원}{3,500만원} \times 2,300만원 = 1,840만원$ 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지원 기관에서 확인)

# 참고 2 신청 자격요건

## □ (인력) 동등학력 인정 요건(트랙1. 휴직 · 단축 연구자 지원만 해당)
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.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
- 비이공계 학위 소지자로서(학·석·박사) 과학기술분야 연구직·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
- ※ 상기 동등학력 인정 요건은 트랙2. 육아기 연구자 지원은 적용되지 않음

#### □ (기관)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

#### 제6조(기초연구사업의 추진)

- 1.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3.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- 4. 국공립연구기관
- 5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#### 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
- 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- 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- 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- 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- 5.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6.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6의2.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- 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# 신청 제한 사항

#### □ 기관 제한 사항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의하여 국가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
- 임금체불,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**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**한 기관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」 제20조 1항에 의한 '신청제외 기관'에 해당하는 경우(비영리기관 제외)

#### < 신청제외 기관 >

- 1. 기업의 부도
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5.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
-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#### □ 인력 제한 사항

-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중복지원 불가)
- 동 사업(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)으로 기 지원 받은 자 ※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및 조기 종료, 협약해약,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포함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
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인턴·전문박사연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육아기 연구자로 사업 신청 불가
- 신청기관의 기관장(사업주), 기관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※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  - ※ 대체인력, 인턴·전문박사연구원, 휴직자, 단축근로자, 육아기 연구자 모두 참여 불가

#### < 친족관계>

#### 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】

- 1. 6촌 이내의 혈족. 2. 4촌 이내의 인척
- 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
- 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# 사업 연간일정

절차 내용 수행주체 · 신규 지원기관 및 지원인력 모집 공고 사업 공고 WISET(위탁운영기관) · 사업 공고 홍보 1 신청·접수 · 신청서 접수(온라인) 지원기관 및 인력 1 WISET(위탁운영기관) 평가 및 선정 ·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/평가위원단 1 협약체결 지원기관/ ·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지급 WISET(위탁운영기관) 1 · 지원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사업 수행 · 지원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기관/인력 · 지원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중간점검(인력/기 WISET(위탁운영기관) ·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관) 및 현장점검 WISET(위탁운영기관) 사업비 정산 ·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/위탁회계법인

※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

#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(예시)

